

최근 개정 주요내용

개정 전	개정 후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) ☞ <u>통계청 개인정보파일 목록 상세내용 보기</u>	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)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☞ <u>상세내용 보기</u> 2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☞ <u>상세내용 보기</u> (정보주체 동의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분리하여 게시)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	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② 통계청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☞ <u>상세내용 보기</u> (제3자 제공 현황 안내)
제3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 ☞ <u>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보기</u>	제3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 ☞ <u>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보기</u> (현행화)
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 ①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1. 개인정보 열람요구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. 삭제요구	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 방법) ①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※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

개정 전	개정 후
4. 처리정지 요구 ②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④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	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,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통계청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 ☞ 개인정보(열람,정정·삭제,처리정지,동의정지)요구서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☞ 위임장 다운로드 ④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가할 권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⑥통계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

개정 전	개정 후
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통계청에 대해 <u>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</u>에 따라 서면, 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계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<u>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</u>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☞ 서식다운로드: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<u>별지 제8호서식 열람요구서</u>] [<u>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</u>]	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 ⑦이의제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☞ <u>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</u> 2. 통계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, 조치 결과를 문서로 안내드립니다. (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, 서식 현행화)

개정 전	개정 후
제14조(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) ☞ <u>가명정보 처리 현황 보기</u>	제14조(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) ☞ <u>가명정보 처리 현황 보기</u> (현행화)
제15조(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) ② 통계청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‘A’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	제15조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) ② 통계청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‘S’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(현행화)